

보 도 일 자

2012. 4. 6. (금) 조간

2012년 3월 KOSPI200사 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

I. 개요

- 한국기업지배구조원 (CGS, 원장 姜柄皓)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원 방안으로 KOSPI200사 의안분석을 수행해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함
- KOSPI200 편입회사 중 2012년 1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190개 상장사에 대해 “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”(2012년 3월 제정)에 따라 의안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함

II. 의안분석 결과 요약

1. 주주총회 일정

- 59개사(31.1%)가 3월16일(금)에, 78개사(41.1%)가 3월23일(금)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특정시기에 집중됐고, **주주총회 소집공고일도 개최일의 평균 17.4일 전** (상법상 기한은 14일전)이어서 심도 있는 의안분석에는 촉박한 일정임

2. 의안 상정 동향

- 4월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 등을 반영해 141개(74.2%) 회사에서 **정관변경 안건**을 상정했으며, 특히 ‘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 승인 허용’(56개사, 29.5%), ‘이사 책임 감경’(70개사, 36.8%) 조항이 정관에 신규 포함됨
- 이 두 조항은 주주 권익 훼손의 우려가 큰 만큼 각각 배당정책 마련·공시, 최종승인 절차로서 주주총회 결의의 정관 명시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 CGS는 반대 투표를 권고함

3. 회사별 · 안전별 반대 권고 비율

- 190개 회사 중 하나 이상 안전에 반대 투표를 권고한 회사는 121개(63.7%)임.
안전 기준으로는 전체 1,489개 안전 중 258건(17.3%)에 반대 투표를 권고함
 - 안전별 반대율(개별건수 기준)은 감사 선임(48.2%), 정관변경(43.4%), 사외이사 선임(32.3%), 감사위원 선임(31.1%) 순이며, 이들 안전에서 매우 높은 수준임
 - 집계하면 16.4%의 이사 후보에 반대하였으며, 여기에 감사, 감사위원을 포함하는 임원 선임 안전에 대해서는 이를 상정한 회사의 50.3%에서 임원 후보 1인 이상에 반대 투표를 권고함
-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“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” 소속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, 동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임원 선임 안전에서 반대율(건수 기준)이 23.7%로서 비소속 회사(16.8%)보다 높아 **부적격 임원 후보 추천** 사례가 더 많음
 - 이는 경영진과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감사위원 후보 등이 위 기업 집단 소속회사에서 더 많이 추천된 데 기인함

Ⅲ. 시사점

- (주주총회 관련)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부담을 덜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을 앞당기거나, 그에 앞선 소집결의 공시 시 안전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**의결권 자문서비스 활성화**가 필요
- (정관변경 관련) 이익배당, 이사 책임 감경 등 관련 정관변경이 주주 권익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**배당정책** 마련 및 공개, 이사 책임 감경시 **주주총회 결의**에 의한 승인 (정관)조항 마련 등 사후 조치 필요
-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임원의 선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**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**와 함께 임원 자격 등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

(붙임) 의안분석 결과 세부 내용 1부. 끝.

※ 담당부서: Proxy Service 부문

담 당 자: 송민경 연구위원 (3775-3884, mksong@cgs.or.kr)

윤정화 연구원 (3775-3744, yinth@cgs.or.kr)

(붙임) 의안분석 결과 세부 내용

1. 주주총회 일정

- (현황1) 190개 회사 중 74.2%가 3월 3주와 4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, 그 중에서도 특히 3월16일(금), 3월23일(금) 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가 각각 59사 (31.1%), 78사(41.1%)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

< 주주총회 개최 일정 분포 >

구분	~3월 1주	3월 2주	3월 3주	3월 4주	3월 5주	계
개최 회사(개)	7	6	59	82	36	190
비율(%)	3.68	3.16	31.05	43.16	18.95	100

- (현황2)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평균적으로 개최일의 17.4일 전에 이루어짐
 - 집합투자업자는 총회일 5일 전까지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해야 하므로, 소집 공고 후 평균 12일(대개 4일의 주말 휴일 포함) 내에 전체 투자대상회사의 의결권 행사 업무를 완료해야 함
- ※ 상장회사는 최소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함(상법 제542조의 4)
- 특정 일, 특정 주에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면, 일정 확인과 정보 수집 등 의안분석에 따르는 기관투자자의 부담이 급증해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짐

2. 의안상정 동향 및 주요 이슈

- 개정상법의 시행(4월15일)에 따라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회사가 141개사 (74.2%)로 매우 많았다는 점이 금년 주주총회의 주된 특징임
 - 중요한 변경 조항은 재무제표 승인 및 (사외)이사 책임 감경 관련 조항임
- 개정상법 제462조 제2항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승인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한 회사는 56개사임
 - (문제점) 동 조항 포함에 따라 회사는 개정상법 조항에 근거해 이익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게 되고, 추후 부적절한 배당으로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게 됨
 - CGS는 “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”(지침 18.3)에 따라 주주 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당 원칙과 기준, 절차 등을 명시한 **배당정책을 마련하여 공개**하지 않은 경우 반대 투표를 권고함
- 개정상법 제400조에 근거해 (사외)이사 책임 감경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한 회사는 70개사임
 - 그 중 주주총회 결의를 별도로 거치도록 한 회사가 59개사, 이사회 결의만으로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 회사가 11개사임
 - 후자의 경우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이사에 책임을 추궁할 주주 권리가 제한되고 회사의 손해 보전이 어려워져 **책임경영 약화**의 우려가 큼
 - CGS는 자체 가이드라인(지침 7.2, 8.4)에 따라 상기 11개사에 반대 투표를 권고하였으며, 나머지 59개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**‘특별결의’**를 거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안분석보고서에서 권고함

3. 안건별 세부내용

- (반대 권고 안건) 반대 투표를 권고한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 93건, 정관변경 62건, 감사위원 선임 60건, 감사 선임 13건 순으로 주로 **임원 선임**(177건)과 **정관변경** 안건임

< 안건별 반대 권고 건수 >

	사외이사 선임 ¹⁾	정관 변경	감사위원 선임 ¹⁾	감사 선임 ¹⁾	사내이사 등 선임 ¹⁾	이사 보수한도	기타 ²⁾	전체
건수	93	62	60	13	11	6	13	258

1)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

2) 주식매수선택권, 장기성과연계 주식보상, 이익배당 안건 등임

- (안건별 반대율) 건수 기준 반대율을 계산하면 감사 선임(48.2%), 정관변경 (43.4%), 감사위원 선임(31.1%), 이사 선임(16.4%) 순으로 역시 **임원 선임**(20.7%) 과 **정관변경** 안건에 주로 반대 권고함

- 회사 수 기준으로는 감사 선임(52.2%), 감사위원 선임(46.2%), 이사 선임(44.6%), 정관변경(44.0%) 순으로 반대율이 높음
- 집계하면 16.4%의 이사 후보에 반대하였으며, 여기에 감사, 감사위원을 포함 하는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상정한 회사의 50.3%에서 임원 후보 1인 이상에 반대 투표를 권고함

< 안건별 반대율 > (%)

	정관 변경	이사 선임 ¹⁾	감사위원 선임 ¹⁾	감사 선임 ¹⁾	이사 보수한도	기타 ²⁾	전체
회사 수 기준	44.0	44.6	46.2	52.2	3.2	6.8	63.7
건수 기준	43.4	16.4	31.1	48.2	3.2	4.3	17.3

1)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

2) 주식매수선택권, 장기성과연계 주식보상, 이익배당 안건 등임

< 임원 선임 안건별 세부 반대율 > (%)

	사내이사 ¹⁾	사외이사	이사 선임(소계)	임원 전체 ²⁾
회사 수 기준	6.9	52.7	44.6	50.3
건수 기준	3.2	32.3	16.4	20.7

1) 비상임이사 포함

2) 임원은 이사, 감사위원, 감사를 모두 포함

3)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

- (임원 선임 반대 사유) 사외이사·감사위원 후보의 반대 사유는 모두 장기연임, 회사 주요거래법인의 특수관계인, 낮은 출석률,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순으로 나타나 낮은 출석률을 제외하고 **경영진과 독립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** 있는 것으로 파악됨

< 사외이사·감사위원 선임 안건별 반대 건수 >

	장기 연임	회사의 주요거래법인 특수관계인	낮은 출석률	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	최대주주 등 주요거래법인 특수관계인	회사의 전 임직원	과도한 겸임	감사 관련 문제 이력	계
사외이사	34	28	20	14	4	4	1	-	93
감사위원	24	13	12	10	4	2	0	2	67

*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

- CGS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이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이사회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함
 - 계열회사 임직원 등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등의 5년 이내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 - 최대주주, 주요주주 등의 주요 거래법인, 협력 법인 등의 3년 이내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 - 대상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이 아닐 것
 -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대상 회사에서 사외이사로서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연속 재임 연수가 7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
 - 최근 3년 이내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연간 참석률이 75% 이상일 것

-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**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여부**에 따라 구분하여 반대율을 확인하면,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가 임원 선임 안건에서 반대율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
- 임원 선임 안건에서 위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건수 기준 반대율은 23.7%로 비소속 회사(16.8%)보다 높아 **부적절한 임원 후보 추천 사례**가 더 많음
- 그 이유는 장기연임, 회사의 최대주주·주요거래법인의 특수관계인 등 사유로 **독립성에서 문제가 있는 감사위원 후보, 과거 주주권익을 훼손한 이력이 있는 최대주주 등 사내이사 후보**가 더 많이 추천되기 때문임

<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여부와 임원선임 안건별 반대율 > (%)

	사내이사 (비상임포함)		사외이사		이사 선임 (소계)		감사위원		감사		임원 전체 ¹⁾	
	I ²⁾	II ³⁾	I	II	I	II	I	II	I	II	I	II
회사 수 기준	8.8	4.6	52.6	52.9	47.8	40.5	47.7	42.3	80.0	44.4	50.5	50.0
건수 기준	4.2	2.2	32.4	32.1	18.7	13.5	35.4	22.7	57.1	45.0	23.7	16.8

- 1) 임원은 이사, 감사위원, 감사를 모두 포함
- 2) I 은 2011년 공정거래법상 “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”으로 지정된 55개 기업집단 소속 회사임
- 3) II는 상기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임
- 4)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